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수요가 높은 대전·광주 소방본부장의 직급을 기존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획 담당 실장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소방 담당 본부장
서울특별시	「국가공무원법」 제2 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급 또는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4명)	소방 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14명)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1명)	소방 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2명)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세종특별자치시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 준감
경기도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2명, 이 중 1명은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국장)	소방 정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2급 또는 3급 일반 직 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소방감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본부장 직급 상향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임명된 소방본부장의 직급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본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3